

經營學의 考察方法에 대한 制度理論的 考究

姜 一 秀
(東 國 大 學 校 · 講 師)

차 례

- | | |
|-----------------|--------------|
| I. 머리말 | 1. 制度的思考 |
| II. 經營의 選擇原理 | 2. 經營의 制度的把握 |
| III. 經營의 制度的 本質 | IV. 結 言 |

I. 머리말

經營學의 方法論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各種 形態로 나타나 있지만 그 方法論爭의 窮極의目標는 經營學이 理論科學이나 또는 實踐科學이나 하는 課題를 解決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結論으로는 대체로 經營學은 實踐科學이어야 한다는데에 歸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經營學의 認識目的이 解決된다 하더라도 그와 關聯下에 隨伴的으로 問題化되는 것은 經營學의 考察方法이다. 이 考察方法은 經營目的에 대한 手段方法의 形成過程을 이루는 選擇原理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는 倫理的으로 超越的으로 위에서 規範을 設定하는 規範科學(normative Wissenschaft)의 考察方法과 經驗的, 實在的으로 밑에서 基準을 規定하는 經驗科學(Erfahrungswissenschaft)의 考察方法의 兩立場이 있다. 그러므로 考察方法은 經營學의 認識目的과 더불어 經營學의 方法論上 重要한 課題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經營學의 考察方法인 選擇原理가 收益性의 것이건 經濟性的 것이건 그것이 經營의 目的原理로 될 때에는 經營現象의一面의 把握에 빠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어떠한 選擇原理를 택할 것인가가 研究論者의 對立點이 된다. 그러므로 經營의 目的是 무엇인가 즉 收益性인가 經濟性인가 그렇지 않으면 相互矛盾關係인가 또는 相互交互作用인가라는 問題를 「주어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組織的 全體」로서의 經營의 制度的 本質을 把握함으로써 解決코자 하는 것이 所論의 의도다.

II. 經營의 選擇原理

經營의 選擇原理는 經營目的達成을 위하여 經營現象의 形成을 合目的的으로 遂行하는 指導原理를 말한다. 이 選擇原理는 어디까지나 目的을前提로 하는 原理인 까닭에 結局은 經營目的의 經營의 實踐原理 즉 選擇原理를 이루는 本體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이 經營의 目的이 經營의 選擇原理를 이루는 까닭에 從來부터 經營學의 考察方法에는 하나의 選擇原理가 使用되어 왔다. 特히 實踐的 經營學에 있어서는 그 研究目的의 經營現象을 合目的的으로 形成하기 위한 規準과 節次方法을 設定하는데 있으므로 經營目的에 대한 經營現象의 合目的的 形成이 當然히 問題化되는 것이다. 勿論 이 때의 經營現象의 合目的的 形成을 위한 指導原理는 바로 經營目的에 該當하는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選擇原理(auswahl Prinzip)에는 두개의 相異한 立場이 있다. 그 하나는 收益性原理(profitability, rentabilitäts Prinzip)이며 다른 하나는 經濟性原理(economic principle, Wirtschaftlichkeitprinzip)이다. 이와 같이 選擇原理에 相異한 立場이 存在한다는

것은 經營의 目的觀이 相異한데서 起因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經營의 本質 把握에 있어서 統一性을喪失한 데서 起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兩立場을 冷靜히 分析 批判하고 各立場의 缺點을 發見할 적에 비로소 選擇原理의 統一的 方向을 究明하는 立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經營學의 考察方法에 대하여 正確性을 기하여 經營學研究의 方法論을 樹立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兩立場을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收益性原理의 立場은 最大의 收益을 達成하는 데에 經營의 目的이 있으며 그러한 最大의 收益達成을 위한 規準 및 手段方法을 設定하는 것이 經營學研究의 對象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收益性原理의 觀點에 立脚한 技術論의 經營學을 稱하여一般的으로 「利潤追求學」(Profitslehre)¹⁾이라고 한다. 리거가 (Rieger)는 그의 經營學에 있어서 個別資本增殖過程을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지마는 그는 經營現象의 法則의 認識을 任務로 하는 純粹理論科學만을 志向하는 立場에서 技術論을 排擊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利潤追求學」은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經濟性原理는 Nicklisch 와 Schönpflug 를 中心으로 한 規範科學의 立場이며 技術學派라고 稱하는 Schmalenbach 까지도 이 立場에 따르고 있다. Nicklisch는 經營을 稱하여 人間의 欲求와 充足과의 사이에 다리(橋)를 놓아 주는 需要充足經濟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그는 經營은 經濟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며 經營은 또한 經營이라는 形式에 있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 여기서 보는 바와같이 그는 어디까지나 經營의 目的과 意味를 經濟로서 規定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經營의 經濟過程을 價值循環過程으로서 把握하여 그것을 收益達成過程과 收益分配過程으로 區分하고 있는데³⁾, 이것은 經營의 經濟概念을 價值의 生產과 아울러 價值의 分配까지도 包含하는 것으로 考察한 것이다. 사실 價值의 生產이라고 하면 그 自體만으로서는 成立不可能한 말이며 價值의 分配過程이 따르지 않고서는 價值生產의 繼續性은 存續하지 못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Nicklisch는 經營의 本質을 需要充足經濟라고 規定하는 同時に 經營의 經濟過程을 價值形成過程과 價值分配過程으로서 構成된다고 하여 그의 研究對象에서 收益性을 目標로 한 企業概念을 전혀 排除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企業內에서 經營이 아닌 것이 없으며 全體로서의 企業은 모두 經營에 不過하다』고 한다. 同時に 그는 企業家를 가르켜 『企業家는 經營의 内部에 存在하는 것이지 經營의 外部에 存在하여 可及의 最大限의 利益을 얻기 위한 吸血器(Schonpfkopt)처럼 즉 불어 있는 企業이라는 特殊한 構成體內에 存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吸血器는 有機의인 經濟下에서는 存在할 餘地가 없다.』⁴⁾라고 說論한다. 前記한 바와 같이 그는 經營의 所有單位인 企業을 全體로서의 經營으로 看做하는 데에서 經營의 目的과 意味를 企業의 目的과 意味로同一視하였다. 그러므로서 그는 收益性의 體化者로서의 企業家는 存在의 根據를 發見할 수 없다고 結論지운 것이다. 따라서 그는 企業家도 勞動者와 마찬가지로 經營이라는 全體에 있어서 同格의 存在物로 본 것이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Nicklisch는 經營의 目的과 意味를 經濟에 두는 즉 需要充足經

1) 藥利重隆著：經營學の基礎、(昭和32年) pp. 3~6.

2) H. Nicklisch: *Die Betriebswirtschaftslehre*. 1929, S. 6.

占部都美著：近代經營學、p. 135.

3) 同書、pp. 153~6

4) H. Nicklisch: *Wertschöpfung, Betrieb/unternehmung, Die Betriebswirtschaft*. 1937, S. 267.

占部都美著：同書、pp. 153~6.

濟로 規定하기 때문에 收益性을 目標로 하는 企業 概念을 全혀 排除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需要充足經濟過程에 있어서의 收益性概念은 排除된 것이 아니다. 그는 經營의 目的이 무엇이냐, 收益性이냐 需要充足性이냐 하는 問題에 대하여 確答하기를 『그런 問題는 誤謬이다』라고 하면서 需要充足性과 收益性과는 對立이 될 수 없는 問題라고 하였다. 오히려 그關係는 收益의in 紿付(rentable Leistung)에 의하여서만 需要充足이 達成되는 것이며 또한 達成된 需要充足은 紿付의 平均으로 인하여 收益의으로 이루어질 基礎가 되는 것이다. 고로 收益의이 아닌 經營은 需要充足에도 不適當할 것이며 收益의in 經營만이 需要充足에도 適當한 것이라고 하였다.¹⁾

우리는 여기서 *Nicklisch*도 收益性을 認定한 點을 看過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認定하는 收益性이란 需要充足을 위한 紿付(Leistung)에 均等한 反對給付인 收益임을 깨닫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換言하면 紿付와 一致하는 反對給付를 收益이라 看做한 것이다. 그러므로 收益이 需要充足인 紿付 以上으로 增大化하면 그 差額은 不正한 收益 즉 紿付없는 收益이 될 것이며 結局 利潤追求의 結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한 理由에서 *Nicklisch*가 말한 公正配分 亦是 利潤追求를 排除하자는 데에서 強調된듯 싶다. 그러므로 *Nicklisch*가 말한 收益性이란 어디까지나 需要充足과 一致되는 點 즉 *Drucker*가 말하는 企業維持費用²⁾에 該當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前述한 價值配分을 經營遂行과 經營繼續을前提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적에 *Nicklisch*에 있어서의 經營의 經濟過程은 하나의 *Gemeinschaft*의in 本質의 具現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經營의 目的과 企業의 目的을 同一視한 것도 이러한 *Gemeinschaft*의 思想으로는 當然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Nicklisch*는 經營의 目的과 意味를 經濟에 두고 解釋하고 있다지만 그가 意圖하는 經營의 經濟過程은 純粹한 需要充足이라는 共同體經濟를 目標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經營의 目的原理를 經濟性原理라 하기보다는 차라리 共同經濟의 生產性의 原理(gemeinwirtschaftliche Produktivität)라고 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Nicklisch*의 影響을 多分히 받은 増地庸治郎博士도 그의 著書 “企業形態論”에서 『經營은 生產을 目的으로 하는 單獨의in 生產經濟單位다』³⁾라고 規定하여 經營의 目的을 *Nicklisch*의 需要充足經濟에다 두고 있는 點으로 보아서는 *Nicklisch*의 見解와 다른 바는 없다. 또한 그는 『經營經濟의 目標는 經濟性의 追求에 있다』⁴⁾고 하는 데에서 經濟性은 技術的 合理主義가 아니라 手段選擇의 原理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經濟性은 紿付(Leistung)와 그 紿付를 위하여 消費된 費用(Aufwand)과의 比較衡量이며, 成果와 費用과의 比較衡量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經濟性은 成果와 費用과의 比較衡量에 있음으로 반드시 그것은 成果와 費用과의 差額인 利潤을 增大化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意味에 있어서 그는 『經濟性의 原理는 營利性을 目標로 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營利性을 追求하지 않는 公企業에 있어서도 妥當하다고 하여 利潤追求라는 營利性은 「經營의 經濟概念」에서 追放되어야 한다』⁵⁾고 主張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도 그가 말하는 「經濟性의 追求」는 *Nicklisch*의 「需要充

1) H. Nicklisch: *Die Heutige Bedeutung der Rentabilität für den Unternehmer*, Die Betriebswirtschaft, 1937, Heft 2, S. 31.

占部都美著：同書. pp. 153~6.

2) 漢利重隆著：同書. pp. 249~254.

3) 増地庸治郎著：企業形態論. (昭和5年). p. 16.

4) 同書. pp. 1~16.

5) 同書. pp. 22~25. 工業經營論, 21年. pp. 3~6.

足과 收益性의 一致』라는 見解에 同一한 立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經營에 必要한 財產과 經營의 約定를 所有하는 組織이 企業이며』또한『企業은 經營의 所有單位』¹⁾라고 規定함으로써 企業概念을 認定한 點은 Nicklisch와 다른 點이라 할 것이다. 그가 概念하는 企業은 어디까지나 經營의 所有單位이지 營利性을 本質的 特徵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Nicklisch의 基本的 見解와 何等에 差異點을 發見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있어서 企業概念도 經營의 歷史社會的 關係에서 極度로 抽象化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서 經營의 指導原理인 經濟性原理도 企業의 指導原理가 되어야 한다고 規定되는 것이다.²⁾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營經濟의 目的原理인 經濟性原理는 歷史的 具體性을 떠나서 規範的으로 規定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特異한 點은 이와 같은 規定에 따라 經營學을 利潤追求學의 性格에서 脫皮시켜 客觀科學으로서 醇化發展시키려고 한 것이 바로 Schönplug의 意圖였다. 그는 經濟性原理를 가르쳐 經營學의 選擇原理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經營學의 醇化過程에 一大進展을 가져온 것이다.

그는 需要充足手段의 調達이라고 하는 것은 그 自體로서는 經濟概念을 規定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經營을 經濟라고 하는 것은 經濟的 觀點이며 말하자면「經經濟性의 原理」(Prinzip der Wirtschaftlichkeit)가 經營經濟學의 選擇原理가 아니면 아니된다고 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經營經濟學의 認識對象은 經經濟性原理를 選擇原理로 하여 把握되는 經營의 經經濟性現象이며 그 외의 經營現象은「非本質的」인 것이라고 하고 있다.³⁾

위에서 Schönplug가 經濟的觀點이 經濟概念을 規定한다고 할적에 그의 論據는『人間의 基本行為가 經濟的 基準에 의하여 合目的的 行為의 合理性與否를 規定짓는 經濟的 觀點에 依存한다』고 하는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經濟的 觀點이란『達成된 또는 達成될 成果(Erfolg)의 價值가 費用價值를 積極的으로 超過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에 대하여 計算하려고 하는 考慮가 行為決定에 있어서 作用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費用과 成果와의 差額인 剩餘價值의 達成 與否에 대한 經濟的 考慮가 行為決定의 要素가 될 적에 비로소「經濟」가 存在하는 것이라고 한다.⁴⁾ 따라서 이러한 經濟的 考慮의 基本的形式은 소위 經濟性原理로서 <成果價值 - 費用價值 = 差額剩餘>라는 方式으로 表示된다. 그러므로「經濟한다」(economize)는 말은 이 差額剩餘를 最大限度로 達成하기 위한 行為라고 規定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Schönplug의 經濟概念은 收益性的 行為概念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換言하면 그에 있어서 經濟가 經濟의 考慮에 의하여 規定된다고 하면 收益性與否 즉 差額剩餘의 多少만이 行為原理의 基本要素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에 있어서 經濟性原理는 收益性과 다른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Schönplug의 經濟性原理(選擇原理)는 自然的으로 收益性으로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意識的으로 收益性을 經濟性概念에서 除去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條件을 結付하여 經經濟性概念을 規範화하고 한다는 것은 注意하지 아니하면 안될 점이다.

1. 經濟性을 決定하는 價值의 大小與否는 하나의 內在價值(Binnengröße)로 取扱한다.⁵⁾

이것은 市場價格 또는 貨幣價值에 의한 評價와는 關係없이 評價함을 말함으로 어디까지나

1) 同書. pp. 16~17.

2) 同書. p. 25.

3) Schönplug: *Erkenntnisgegenstand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1936. S. 153~8.
占部都美著: 同書 p. 11.

4) a. a. o., s. 116 同書. p. 11.

5) a. a. o., s. 124 同書. p. 11.

獨斷的 計算임을 意味한다. 그런 意味에서 經濟性計算을 収益性計算과 區別하려는 것이다.

2. 實行하여야 할 行爲의 選擇에 있어서 經濟性이 決定的인 基準이 될 때에 經濟가 考慮된다.¹⁾

따라서 經濟計算制度는 經濟性判斷의 前提가 되지만 그 自體로서는 目的을 위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經濟라고 하면 選擇하는 것이다.』(Wirtschaften ist wählen)라고 지적하고 있 다.

3. 이러한 經濟的 觀點은 絶對的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밑에서는 技術的 能力에 의하여 限 定되며 위에서는 社會的 倫理的 觀點에 의하여 限定되는 것이라고 한다.²⁾

위에서와 같이 Schönpflug가 말하는 經營의 經濟概念이란 價值計算의 考慮라는 하나의 判斷基準에다 求하고 있지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價值計算의 表示는 內在價値라는 抽象性에 基礎를 두고 있기 때문에 經營의 具體的 關係에서 극도로 유리된 抽象的 把握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의 經濟概念에서는 經濟의 本質인 生產의 概念이 排除된 점은 前二者의 Nicklisch와 地增博士等의 經濟概念과 다른 점이다. 참으로 經濟的 紙付生產이라는 具體的 事實에서 抽象化된 經營이야 말로 形式的 概念에 不過한 것이다.

그의 經濟概念이란 로빈스(Robbins)教授가 經濟學을 定義하여 『目的과 代替的(alternative)으로 利用할 수 있는 稀少한 手段사이의 關係로서 나타나는 人間行動을 研究하는 學問』³⁾라고 한 點과 同一하다. 로빈스教授도 目的에 대한 稀少性的 手段을 選擇適用하는데 있어서 經濟의 考慮가 行爲判斷의 基準이 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Schönpflug와 Robbins의 經濟concept에는 經濟와 經濟의이라는 두개의 相異한 概念이 混同되어 後者의 「經濟的」이라는 것에 의하여 人間의 厚生을 目的으로 하는 經濟concept을 規定하려고 하는 점은 理論上矛盾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勿論 經濟에 있어서 經濟의인 判斷이 重要한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그러나 經濟의인 判斷은 經濟外의 一般社會生活에 있어서도 必要한 것이다. 사실 現實의 經濟에 있어서 經濟性은 紙付生產의 協同過程에 있어서 支配的인 行爲規準을 形成하지만 그 보다도 人間의 慾望과 充足과의 사이에 繼續的인 調和過程이 더욱 더 重要하여 本質的인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Schönpflug에 있어서 經營學의 選擇原理로 하는 經濟性原理는 레만(M. R. Lehmann)이 指摘한 바와 같이 經濟行爲를 規定하는 第二次의in 補完原理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妥當할 것 같다.⁴⁾

以上을 要約하여 보면 三者の 經濟性理論이 각기 外形的으로는 相異한 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內容에 있어서는 經營의 営利性을 排除하고 經營의 具體的 本質에서 極度로 抽象化되어 經營의 本質을 抽象的 全體로 하는一面만을 把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그들이 規定하는 經營concept은 規範科學의 理論體系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具體的으로 考察하여 볼 적에 經濟性原理가 經營의 指導原理인 同時に 選擇原理를 이를 通에 經濟性原理가 經營目的에 대한 手段concept을 이루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렇듯이 經濟性原理가 다만 手段concept으로서 把握된다면 經濟性 그 自體는 営利性을 目的으로 하면 非營利性을 目的으로 하면 간에 經營目的을 위하여 選擇的 方法으로 作用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1) a. a. o., s. 127 同書. p. 12.

2) a. a. o., s. 124-7 同書. p. 14.

3) L. C. Robbins: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2ed. 916.

Kenneth E. Boulding.: *Economic Analysis*. 1956 (朴喜範外 共譯) p. 16.

4) M. R. Lehmann: *Allgemeine Betriebswirtschaftslehre*. 1949. ss, pp. 2~3.

그러므로 結局 經營의 選擇原理는 목쓰터 (A. Moxter)의 말을 引用할 必要도 없이 收益性이나 經濟性이 나 하는 問題가 經營學 方法論上: 하나의 重要한 課題가 되는 것이다.

經濟性에 관한 諸理論을 보더라도 그것이 成果와 費用의 差額을 計算하는 比較衡量의인 經濟的思考이었다. 勿論 이와 같은 比較의 經濟的思考는 經濟性을 目標로 하는 經營에 있어서나 收益性을 目標로 하는 經營에 있어서나 다같이 經營方策으로서 作用하고 있다. 그려한 意味에 있어서 우리는 經濟性을 規範的 經營學에 固有의 原理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經濟性이란 經營하는데 있어서는 어데나 할 것 없이 共히 作用하는 基本의 行爲原理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規範的 經營學에 있어서 經濟性原理를 그의 固有原理로 樹立하려는 데에는 自然히 收益性의 面을 封鎖한 측 規範化한 抽象의 經濟性을 樹立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故로 이러한 規範的 經營學의 經濟性이란 不安全한 制限의 意味의 原理로 밖에 認定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性이냐 收益性이냐 하는 問題는 一定한 經濟構造下에서 兩者的 크기가 同一하다면 兩原理에 대한 選擇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 兩者間에 顯著한 差異가 생길 때에 重要的 問題가 發生하는 것이다.¹⁾

現實과 같이 市場經濟가 不安全競爭狀態下에 促 칼렐(cartel) 트ラ스트(trust) 多占的 寡占的 또는 獨占의 狀態下에서는 企業의 利潤은 반드시 經濟性의 發揮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獨占의 地位의 利用에 의하여 獲得되게 된다면 이미 經濟性과 收益性의 一致는 存在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經濟性과 收益性과의 大小關係는 經濟構造의 變化에 의하여 規定된다 할 수 있다.

더우기 評價問題에 있어서도 *Schönplug*가 經濟性이란 하나의 內在價值의 大小를 意味한다고 할 적에 市場에 있어서 企業이 實質적으로 取得하는 利益 가운데서 景氣的 投機的 利潤 혹은 摘取利潤等을 除外하고서 純粹히 經濟性만을 어떻게 測定 計算할 것인가가 問題다. 企業이 언제나 市場經濟의 環境下에 存在하는 限 費用도 成果도 모두 市場評價를 떠나서는 成立할 수가 없는 것이다. 生產의 着手로부터 生產의 完了에 이르기까지 市場을 通한 過程이며 市場을 通한 計算이기 때문이다.

또한 *Nicklisch*의 成果配分의 公正性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成果配分過程에 있어서도 經濟性原理가 作用한다고 主張하는 것은 그의 「需要充足과 收益性의 一致」라는 思想의 當然한 歸結이라 할 것이다. 그는 經濟性의 基準을 $\frac{\text{對價}}{\text{給付}} = 100\% \left(\frac{\text{賃金}}{\text{勞動給付}}, \frac{\text{企業者賃金}}{\text{企業者給付}} \right)$

自己資本利子 100%)²⁾라는 公式을 表示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公式에서 보는 바와 같 自己資本給付 이 配分은 紿付에 대하여 一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기 때문에 經營의 價格政策에 있어서도 經濟成果 가 되도록 決定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問題는 公正分配의 基準 自體가 如何히 評價되느냐의 問題다. 우리는 *Nicklisch*의 經濟性의 基準이 抽象의이요 觀念의 評價觀念에 立脚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經濟의 價格政策의 基礎가 되는 經營給付의 價值를 市場評價를 떠나서 어떻게 測定할 수 있으며 勞動者의 賃金의 基礎가 되는 勞動給付는 어떻게 測定할 것인가가 困難한 問題다. *Nicklisch*는 처음부터 市場性問題는 考慮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어디까지나 市場經濟를 度外視하고 經濟와 經營과의 關係만을 取扱하였기 때문에 그가 생각한 經濟性의 測定이란 自然

1) 占部都美著：經營學の方法，(第一卷) p. 45

2) 市原季一著：どいつ經營學，pp. 122~3.

占部都美著：近代經營學，pp. 158~160. 經營學の方法，p. 48.

히 倫理의 基準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物的的 紙付에 대한 代價測定보다 實際의으로 企業者給付의 代價 또는 資本給付에 대한 代價測定은 더욱 計算이 困難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賃金 또는 利潤高에 대하여 倫理의으로 测定한다는 非難을 曲기 어렵다.¹⁾

事實 우리 人間은 거의 不確實한 行爲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本能일 것이다. 우리가 俗사 實確한 行爲의 基準을 가지지 않는다는 할지라도 可能한 限界를 만한 것을 選定하고 그에 의해서 行爲의 基準으로 삼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Nicklisch*도 經濟性 测定의 基準을 抽象的 倫理의으로 規定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抽象的 倫理의 测定基準의 基礎에는 반드시 어떤 基準의 對象物이 存在하였으리라고 믿는다. 人間은 어떤 事實을 생각할 적에는 반드시 다른 事實의 關聯下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Nicklisch*가 經濟性基準을 經營共同體 (*Betriebsgemeinschaft*)의 形成維持에 難題에는 그의 思想가운데에는 반드시 共同體의 維持를 위한 测定의 基準이 作用하였으리라고 본다. 換言하면 抽象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些 degree 經驗的 事實에서 緣由하는 것이므로 그의 經營共同體의 思想에 있어서의 經濟性은 絶対 非測定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Nicklisch*의 經濟性이 非測定의이라고 非難하기보다 오히려 그가 그러한 規範科學으로서 經營學을 樹立하게 된 歷史社會의 背景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 보는 것이 그의 經濟性을 把握하는데 重要할 뿐만 아니라이다. 특히 그가 資本利子를 規定한데 대하여서 그 测定方法이 疑問되지만 配分의 公正性을 위하여 云謂된 點은 資本의 生產性을 認定한데에서 重要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는 公正의 原則 良心의 法則 自由의 法則이라 하여 經驗科學의 實證範圍를 넘어서 哲學의 規範에까지 進入하여 主觀的인 價值判斷을 混入한다는 意味에서 「科學以前」이라는 髒評까지 받는 것도 無理가 아닐 것이다.²⁾ 더우기 그의 經濟性과 共同經濟의 生產性이 經營의 目的的概念을 이룬다고 하면 收益性原理에 比하여 多義의이어서 形而上學의 規範의 立場에 立脚한 것이라는 非難을 曲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共同經濟의 生產과 收益性이 一致한다 할 적에 그것이 需要充足을 意味하는 것인지 社會의 產物의 增大를 意味하는 것인지 또는 配分의 均等을 意味하는 것인지 그 範圍가 不確實하다는 것이다.³⁾

經營活動에 대한 規範 또는 規準이 倫理의으로 위에서 超越의으로 賦與될 적에 經營은 이미 實證의 註納의 經驗科學이 아니다. 막쓰·웨버 (*M. Weber*)와 솜바르트 (*W. Sombart*)의 論爭에서 解決하여 준 바와 같이 倫理의인 價值判斷이 科學으로서 아무런 意味가 없는 것이다.⁴⁾

이제 結論한 바와 같이 倫理의, 規範의 立場의 經濟性原理가 科學으로서 價值를喪失하였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具體的 現實狀態에서 科學의으로 體系化된 選擇原理가 樹立되어야 함은 當然한 일이다. 經濟性原理가 倫理의이요, 規範화한 主原因은 그것을 現實의 經營活動에서 極度로 抽象化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規範의 過程을 밟게 된 窮極的動機는 그와 對立的 立場에 있는 收益性을 排除하자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性原理는 收益性을 排除하기 위한 目的에서 規範化過程을 밟게 되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1) 占部都美著：經營學の方法。p. 48

2) 小昌太郎著：經營學序說。32年。p. 89

3) 占部都美著：同書。p. 47

4) W. Sombart: *Die Drei Nationalökonomien*, 1930

(小島昌太郎監修邦譯) “三つの經濟學” 昭和5年。p. 25

이와 같이 收益性을 排除하자는 經濟性原理가 科學으로서 意義를 상실하였다면 이제 收益性原理만이 經營의 選擇原理로서 存立의 價值를 갖는다는 말인가. 원래 市場經濟下에 있어서의 經營은 市場을 떠나서는 存在할 수가 없는 것이다. 經營이 直接 市場과 關係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經營을 所有하는 企業은 經營과 市場의 中間에 서서 經營에 必要한 모든 原料, 生產手段 및 勞動力を 市場에서 購入 調達하는 同時에 經營의 結果인 生產物도 市場에 供給 處分하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企業은 無色中立的 形態로서 經營과 市場을 連結하여 주는 中間帶과 할 수 있다.¹⁾

그러나 經濟의 所有單位인 企業은 經營을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經營이 企業을 위하여 存在하는 것임으로 어디까지나 企業의 維持問題를 為主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企業은 自己를 形成維持하기 위한 源泉으로서 經營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그려므로 企業은 經營을 指揮함과 同時に 經營의 結果를 市場에 있어서 販賣를 通하여 市場評價에 準한 代價로서 回收하려고 努力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企業의 繼續性은 保障될 수 없으며 企業의 繼續性이 保障되지 않는 한 經營도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市場經濟下에 있어서의 經營은 企業을 위하여 存在하는 것임으로 그에 있어서의 經營活動의 指導原理는 當然히 收益性으로서 나타난다. 實際과 같이 競爭이 甚한 市場經濟下에 있어서는 收益性을 行爲原理로 하지 않고는 經營은 企業을 維持시키지 못한다.

좀 具體的인 例로서 原價計算의 觀點으로 보더라도 원래 原價計算이란 製品의 價格決定을 위한 基礎的 資料를 提供하는 것이 主目的이지만 價格競爭이 甚할 경우에는 經營活動을 統制하여 非能率의 要素를 除去함으로써 經營合理化를 圖謀하는 것이 重要하게 된다.²⁾ 이것은 어디까지나 原價補償을 위하여 取해진 不可避難手段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激甚한 價格競爭의 경우에는 最少限의 原價補充도 困難하게 됨으로 結局은 販賣政策 特히 價格政策에 主力を 다 하여 多額의 收益을 獲得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다.³⁾ 그려므로 紿付를 위하여 消費된 經濟價值를 正確히 計算하는 것이 原價計算의 任務이지만 그 計算된 原價가 收益性을 指導原理로 하는 販賣活動에 의하여 補償되어야 한다고 하면 結局 原價計算 그 自體는 收益的 行爲의 基準原理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原價計算은 Nicklisch等의 經濟性計算과는 달라 市場評價에 의한 費用計算임으로 마땅히 補償도 市場評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市場評價에 準한 費用補償을前提로 할 때에 經營行爲의 選擇原理는 收益性이 된다. 특히 販賣過程에 있어서 行動의 原理는 收益性原理인 것이며 經濟性原理는 아니다. 이것을 좀 더 具體적으로 分析하자면 經濟性概念에서 말하는 「需要充足과 收益性의 一致」 또는 「共同經濟의 生產性의 一致」問題等은 販賣過程에 있어서는 測定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그 抽象的 規範의 經濟性에 立脚한 思考 및 行爲는 販賣過程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販賣過程에 있어서의 思考 및 行爲의 基準은 收益性이며 實際 貨幣의 差額取得過程으로서 나타난다.

또한 販賣過程에 있어서의 行爲原理는 市場經濟에 있어서 貨幣의 差額인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製品에 대한 用役性(serviceability)보다 販賣性(vendibility)을 重要視하는 行爲慣習을 形成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販賣性의 行爲慣習이 體化한 것이 企業概念이며 用役性의 行爲慣習이 體化한 것이 經營concept이다. 用役性이란 販賣性과는 關係敘이 人間의 慾望의 充足을 目的으로 한 用役性創造라는 行爲慣習을 形成하기 때문에 兩概念은 同一目

1) 増地庸治郎著: 同書, pp. 16~17.

2) 橫濱市立大學會計學研究室編: 原價計算事典, 昭和 31年, p. 13. 蘇眞德著: 原價計算, p. 11.

3) Thorstein Veblen: *The instinct of workmanship*, 1914, pp. 66~67.

의에 대한 相異한 側面의 行爲慣習이라 하는 制度를樹立하게 되는 것이다.

베블렌(Veblen)은 近代企業은 두개의 相異한 制度의 基礎 위에서 存立한다고 한다. 그 하 나는 企業原理라는 制度의 基礎위에 다른 하나는 能率原理라는 制度의 基礎위에 存立한다. 企業原理는 「利潤取得을 目的으로 한 生產」이며, 「使用을 위한 生產」이 아닌 까닭에 어디까지나 商品의 用役性이란 商品의 販賣性을 높이며 利潤取得을 하는 範圍에서만 意味를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企業原理는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한다는 意味에서 收益性原理라 할 수 있으며 그와 反面에 能率原理는 能率의으로 有用한 財貨를 生產하여 社會의 福祉에 财獻한다는 意味에 있어서 用役性原理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近代의 機械의 生產方法을 契機로 하여 成立한 兩原理中 前者의 制度의 基礎를 企業이라 하고 後者의 制度의 基礎를 經營이라고稱한 점은 注目할 만한 考察方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以上 베블렌(Veblen)이 말한 바와 같이 企業의 二重制度의 性格을 理解한다는 것은 참으로 重要한 일이다. 그의 說에 따르면 企業原理는 收益性原理에 해당하며 能率의 原理는 經濟性原理에 該當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은 이 兩原理를 基礎로 하는 兩制度上에 存立한다는 것이妥當한 것 같다. 왜냐하면 一定한 選擇原理를 가지고서 行爲過程을 달리 하는 兩制度上의 共通原理로 한다는 것은 分明히 矛盾이기 때문이다.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收益性原理를 갖고서 價値創造를 目的으로 하는 經營過程을 規律한다는 것은 矛盾이다. 베블렌이 말하는 바와 같이 經營過程에서는 收益과는 關係없이 社會福祉를 위하여 有用한 財貨生產을 할 수 있도록 能率增進을 遂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의 經營過程에 있어서의 指導原理는 能率原理인 것이다. 이와 같이 能率原理에 의하여 財貨에 用役性을 賦與할 때에 財貨는 市場에 있어서 販賣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에 企業은 事實上 用役創造過程과 收益性達成過程으로 構成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定한 選擇原理로서 經營學의 出發點이며 秩序原理며 또한 目的原理로 할 때에는 經營現象의一面의 把握에 빠질 憂慮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한 選擇原理를 擇할 것인가는 研究者の 世界觀에 左右되는 傾向이 許多하다. 過去에도 이와 같은 對立競爭은 많았다.

經營의 目的이 收益性이냐 또는 經濟性이냐 그렇지 않으면 收益性과 經濟性과의 矛盾關係냐 또는 兩者的 相合이냐 하는 問題이다. 이와 같은 問題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經營의 制度의 本質의 宪明에서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制度理論의 立場에서는 이와 같은 問題解決을 위하여 「組織의 全體」로서의 經營의 制度의 本質을 宪明하는 것을 第一의 任務로 하는 것이다.

III. 經營의 制度의 本質

1. 制度의 思考

앞에서 叙述한 바와 같이 經營의 經營理論에 의하면 經濟性이라는 選擇原理에 의하여 經營現象은 把握되는 바 그에 있어서의 基本的 態度는 一定한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의 合理的選擇이라는 合理主義的 態度이다. 勿論 技術的 合理性도 手段의 合理的 選擇을 行한다는 意味에서는 共通의 合理主義的 態度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合理主義的 態度는 從來의 經營學에 있어서支配的인 基本的 思考를 形成하였던 것이다. Taylor의 科學的 管理法도 또한 이 合理主義的 態度에서 出發한 것이지만 經營學과 密接한 關係에 있으며 더우기 이에 대하여 항상 強力한 影響을 미쳐 오던 經濟學에 있어서까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메이요(E. Mayo)도 引用하고 있는 바와 같이 經營學에 있어서의 合理主義的 思考는 로빈

스 (L. Robbins)의 다음과 같은 말에 要約되고 있는 것이다. 1) 즉 『우리는 樂園에서 追放되었다. 우리에게는 永遠한 生命도 없거니와 또한 滿足할만한 無限한手段도 없다. 우리는 어디를 돌아다 보아도 우리自身이 하나의 物件을 選擇하는 以上 的 環境下에서는 決코 抛棄하지 아니하였을 때 物件을 斷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特定한 目的을 滿足하게 할 諸手段의 稀少性은 人間行爲의 普遍的 條件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經濟學의 主題의 統一性이 存在한다. 즉 稀少性의 手段處理에 있어서 이 稀少性手段의 合理的 選擇이란 우리의 經濟生活에 있어서 統一的基本的事實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經濟의 實際的 生活過程의 合理的 抽象이며 經濟의 全般的인 生活事實을 表示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合理的 抽象은 經營學에 있어서 經濟性 또는 技術的合理性의 原則이 되어 그것이 經營現象을 把握하는 選擇原理로 되어 왔던 것이다.勿論手段의 合理的 選擇이라는 合理主義의 態度가 全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다. 問題는 이러한 合理的 抽象이 오늘날의 社會를前提로 할 때에 어느 程度妥當性을 가질 것인가이다.換言하면 人間의 合理的 行爲는 具體的으로는一定한 制度의 環境下에 있어서 行하여지는 것이며, 더우기 個個行爲의 合理性自體는 時와 場所에 따라서 制度의 環境에 의해서 規定되지 않는가 하는 點이 問題다. 이것은 從前의 經營學에支配되었던 合理的思考로부터 合理主義自體를 限界지우는 制度的思考에 移行함으로써 經營의 生活事實의 좀 더 具體的把握이 可能하게 된다는 데에 制度理論의 要點이 있다고 할 것이다.

메이요 (Mayo)는 具體的分析方法을 通하여 合理的思考의 實現性을 規定하는데에 다음과 같은 세개의 「泡沫的假定」(bubble hypothesis)을 들고 있다.²⁾

1. 自然的 社會는 非組織의인 個個人의 個人(群)로 形成된다.
2. 各個人은 自己保存 및 利己心을 確保하기 위하여 計量 測定된 方法에 따라서 行動한다.
3. 各個人은 그 目的達成을 위하여 能力限 論理의으로 思考한다.

메이요 (Mayo)는 이 세假定은 正常的인 事態下의 人間行爲의 形態에는 妥當치 않는다고 하여 下記의 批判을 加하고 있다.

위의 假定에 있어서 人間은 孤立化된 個個人이며 그 社會는 非組織의 個個人의 集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實際의으로 各個人은 여하튼 社會의 組織의 一員이며 언제나 社會의 個個人 a social self이다. 極度의 非常事態 또는 危機에 있어서 社會의 組織이 破壞될 때에는 社會는 非組織化된 個個人의 모임으로 分散되어 各人은 絶望의인 努力에 의하여 自己保存의手段을 講究할 것이다.各人이 利己心에 의하여서만 行動한다는 假定은 社會의 組織이 存在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限하여 妥當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理論의으로 생각하여 形成된 利己心의 動機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程度는 大端히 적다고 한다. 그들은 社會의 協同이 그들을 失敗케 하였을 때에 비로소 利己心에 還元하게 된다.』³⁾고 말하고 있다. 要는 稀少性手段의 選擇에 있어서 各人이 理論의으로 行動한다는 假定은 社會組織이 全혀 解體되어 있는 非常事態下에 있어서만 妥當한 것이다. 따라서 日常的인 事態下에서의 人間行爲를 研究하려고 할 적에는 上記의 三假定에 立脚한 合理的 抽象은 無効이며 오히려 各人은 一定한 社會의 組織의 一員으로서 行動한다는 것이 오늘에 있어서의 人間行爲의 研究의 有効한前提가 되지 아

1) L. Robbins: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s.* 1954. p. 15 (中山伊知郎監修. 丸大兵衛譯). pp. 24~25.

2) E. Mayo: *The social relations of an industrial civilization.* 1949 藤田教三. 名和統一共譯『アメリカ文明の勞動』p. 54.

3) 前掲書. pp. 58~59.

나하면 안된다.

베르렌(*Thorstein Veblen*)에 의하여 보더라도 그는 傳統的인 經濟學에 있어서의 合理主義的思考에 대하여 痛烈한 批判을 加하여 合理主義의 思考의 象徵인 「經濟人」(*homo economicus*)은 決코 經濟의 生活過程의 主動者(a prime mover)가 아니라고 한다. 經濟社 物質的 生活資料를 収拔하는 人間의 行爲樣式이며 『經濟行爲만 다만 一定한 欲望을 滿足시키는 過程에 附隨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經濟의 生活過程의 基本的 事實을 이루는 것은 活動 그 自體이며 一定한 때에 活動이 自己를 展開하는 特定한 方向을 決定하는 心理的 條件(circumstances of temperament) 그것이 行動하는 個人에 있어서 最終의이며 確定的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個人의 行動을 特定方向으로 決定하는 心理的 條件이란 行爲者의 現在의 心的 態度의 諸要素이며 그리고 그것은 現在까지의 先例 또는 生活經驗의 結果이다.』¹⁾라고 規定하고 있다.

베르렌(*T. Veblen*)에 있어서 이와 같은 見解는 人間의 經濟行爲를 決定하는 要素가 個人的 利己的인 合理的 計算이 아니라 그 特定的 경우에 各人の 行爲의 方向을 決定하고 있는 「一般的 思考慣習」(a prevalent habit of thought)이라는 行爲者的 心理的 條件이며 이 一般思考慣習이 그에 있어서 制度(institution)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이 思考慣習이 『行爲者의 遺傳的 特性이랄지 過去의 經驗이 一聯의 傳統, convention 또는 物的 環境下에서 累積의으로 造成된 것의 結果이며 그리고 그것은 過去에 있어서의 다음段階에 대한 出發點을 이루는 것이다.』²⁾라고 規定하고 있다.

베르렌(*Veblen*)의 制度的 思考는 다음과 같은 말 가운데에서 더욱 더 잘 表現되어 있다. 즉 『個人의 經濟生活의 歷史는 目的에 대한 手段 適應의 累積의 過程이며 그것은 過程이 進行함에 따라서 累積의으로 變化한다. 그리고 그 때에 行爲者와 環境은 모두 어느 時點을 莫論하고 過去의 過程의 結果이다. 오늘에 있어서 個人的 生活樣式은 어제로부터 이어 받은 그의 生活習慣에 의하여 또는 어제의 生活의 機械的 殘存物(mechanical residue)로서 殘有된 環境에 의하여 強制되는 것이다.』³⁾라고 한다.

또한 그는 各人の 行爲樣式이 論理的 思考의 結果가 아니라 生活環境이라는 하나의 社會的 環境 또는 物的 環境에 의하여 強制를 받기면서 目的에 대한 手段選擇의 過程을 形成한다는 意味에서 『人間은 選擇的 必然性을 가진 社會的 有機體(a social organism by selective necessity)다.』⁴⁾라고 말하고 있는 點은 各人이 制度化(institutionalized)되어 있는 思考와 行爲를 하고 있다는 것을 端的으로 表示하여 주는 것이다.

베르렌(*Veblen*)의 影響을 받은 코몬스(*Commons*)는 大株式會社 勞動組合 經營者聯盟 國家等의 發達한 組織化的 時代를 보고서 그 制度的 思考를 더욱 더 具體화하였다. 그는 『現代는 集團行爲의 時代』라고 規定하고 各人은 自己의 生活資料를 取得하기 위하여는 어찌한 組織體(organized concerns)의 member로서 行動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個人的 行爲(individual action)는 그 自體로서는 오늘의 經濟生活에서는 意味가 없으며 集團行爲만이 社會生活의 一般的的 支配的인 事實이며 또한 各人은 『集團行爲의 過程에서 태여나 集團行爲의 規準에 의하여 個別化되는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⁵⁾ 그런 意味에서 그가 制度에 대하

1) Thorstein Veblen: *The place of science in modern civilization*, in "The portable Veblen" 1950, 233.

2) Ibid., p. 233.

3) Ibid., pp. 233~234.

4) Ibid., p. 234.

5) J. R. Commons: *The economics of collective action*, 1951, pp. 21~23.

여 이와 같이 定義하고 있는 점은 注目할 만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制度란 個人行為를 統制하며, 解放하며, 나아가서는 展開하는 集團行爲 (collective action in control, liberation and expansion of individual action)』¹⁾라고 規定한다.

이와 같이 制度는 一定한 行爲規準 즉 規則, 方法, 節次等을 設定(institute)하기 때문에 各人은 一成員이 되기 위하여는 그 行爲規準에 服從하지 않으면 안된다. 換言하면 富의 生產에 參加하여 生產物의 配分을 받기 위하여서는 制度의 設定된 이 行爲規準에 服從하여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各人은 이 行爲規準의 範圍內에 있어서만 手段選擇의 自由를 갖는 것에 지나지 않는 까닭이다. 참으로 合理的選擇의 可能性이 制度의 行爲規準에 의하여 限定됨으로써 各人の 行爲는 一定한 方向으로 統制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各人の 行爲는 制度에 의하여 統制됨으로써 各人은 하나의 制度에 組織化되며 거기서 相互에 特定한 社會關係를 締結하게 되는 것이다. 他面에 있어서 같은 行爲規準에 의하여 다른 成員의 行爲도 統制를 받기 때문에 各人은 他人의 慮意랄지 壓迫에서 解放되는 것이 됨으로 거기에는 社會關係의 安全性이 維持된다. 協同하는 各人の 社會關係의 安定이라는 것이 코몬스가 말하는 能率의 第一原則임은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코몬스는 「部分—全體의 關係」²⁾ (part-whole relationship)로서 叙述하는 바와 같이 組織化의 過程에 있어서 全體는 部分의 算術的 總和보다 더 큰 生產力を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各人은 孤立化한 生產者가 아니라 하나의 制度에 組織化됨으로써 그 個人の 生產力과 그 行爲人格은 擴張(expansion)하게 되는 것이다.

以上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코몬스(Commons)가 말하는 制度란 單純히 法律規則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集團의 人間行爲의 形態이며 廣義의 組織을 가르키고 있다. 그러므로 制度의 實體(substance)란 人間의 目的的 行爲이며 人間의 行爲를 떠나서는 制度는 存在할 수 없는 것이다. 制度라는 形態는 過程의 一部인 까닭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制度는 各成員의 死滅이나 脫退에 關係없이 永續하는 性質의 存在이며 各成員의 個人的私利나 慮意에 의하지 않고 自己의 設定한 客觀的인 行爲規準에 의하여 機能하는 客觀的인 存在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制度는 現實的으로 going concern이며 going concern은 組織이라』³⁾고 할 수 있는 것이다.

要約하면 오늘의 經濟生活에 있어서 支配的인 地位를 點하는 要因은 利己心을 追求하기 위하여 行動하는 個人の 集團이 아니라 個人の 行爲를 統制하는 制度이며 組織이라 하겠다. 그런 意味에서 코몬스(Commons)가 組織的思考를 分析의 中心에 두는 데에는 오히려 거기에 經營學的方法과의 融合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2. 經營의 制度的 把握

—Going Concern을 中心으로—

베블렌(Veblen)이 『經濟過程의 基本的 事實은 하나의 客觀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人間의 積極的인 目的的 性格의 展開活動(unfolding activity of a teleological kind)이다.』⁴⁾라고 規定하는 바와 같이 經營學의 對象인 經營現象도 하나의 動的인 過程인 限 經濟現象에 있어서의 基本的 事實은 一定한 客觀的 目的達成을 위한 人間의 合目的的 活動이다.

그러나 經濟에 있어서 人間의 合目的的 活動은 그 活動의 行해지는 制度的 狀況을 떠나서

1) Ibid., p. 21, p. 26.

2) Ibid., pp. 130~133.

3) Ibid., p. 34, p. 134.

4) T. Veblen: *The place of science in modern civilization*, 1951, ed p. 7.

自由이며, 憲意의인 것이 아니다. 人間의 合目的的活動은 客觀의인 制度의 狀況에 의해서 規定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企業家의 合目的的活動도 그 자신 意識하건 안하건 間에 制度化(institutionalize)되어 있는 것이다.¹⁾ 換言하면 企業家나 經營者의 合目的的 行爲가 決코 自由이며, 憲意의인 것이 아니라 客觀의인 制度의 狀況에 의해서 規定되어 있으며 즉 制度化되어 있기 때문에 企業家나 經營者의 活動을 理論的으로 考察할 수가 있는 것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그들의 活動을 規定하는 制度의 狀況에는 하나의 客觀的 法則性이 作用하기 때문이다.

如斯한 理論에 根據하여 經營學의 對象인 經營은 여기서 말하는 制度-going concern의 概念에 있어서 把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코몬스 (J. R. Commons)는 이에 앞서一般的으로 科學的 認識對象에는 3個의 相異한 立場이 存在한다고 主張한다.²⁾

첫째는 mechanism의 概念이다. mechanism과 하여는 原子나 波動과 같은 自然的 運動法則에 의하여 機能하는 組織이며 그것은 自然의 有目的 劢力에 의하여 어떠한 自然的 均衡에 이르는 性質의 것이다. 이러한 mechanism의 概念은 自然科學의 方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經濟學의 傳統的 分析方法에 있어서도 使用되어 왔다.

둘째는 organism의 概念이다. organism은 mechanism와 달라서 生命 또는 活動의 性質을 가지므로써 그 活動은 相互依存關係에 있는 多數部分의 共同에 의하여 營爲한다. 人體는 organism의 典型的 例이며, organism은 生物學의 認識의 方法이다. 經營學의 方法에 있어서 사용되어 온 「有機體說」은 이 organism의 그것에相當한 것이다. mechanism이 『自然的 均衡으로서 機能함에 대하여 organism은 生成하고 進化한다는 하나의 「過程」으로서 機能한다. 또한 mechanism의 概念은 反復性의 概念을 強調하는데 대하여 organism은 變化의 現象에 注意를 갖는다. 그리하여 이 變化의 現象은 進化의 概念을 이루는 것이며, 따라서 進化는 organism의 統一原理를 形成하는 것이다. 그러나 organism에 있어서의 進化는 「無目的 또는 偶然한 變化의 結果」이며 生成過程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生成過程이란 人間意志 또는 人間目的을 內包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意志性의 原理를 內包하지 않는 意味에 있어서 organism은 自然的 均衡을 原理로 하는 mechanism과 本質上으로는 하등의 差異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mechanism이나 organism의 概念과 달라 going concern에 있어서는 人間의 目的과 그 目的을 위한 意志性의 原理가 加해지는 것은 特徵으로 하고 있다. 코몬스 (J. R. Commons)는 『經濟活動의 研究에서 人間意志(human will in action)가 經濟生活에 있어서 中心의인 것이라』³⁾고 結論한다. 이 점은 베블렌 (Veblen)의 制度理論에 있어서 企業家의 合目的的活動의 制度의 狀況에 의한 被規定性이 強調되어 制度의 狀況에 대하여 合目的的으로 活動할 企業家의 意志, 意識의 活動이 認定되지 못하였던 것과 區別되는 점이다.

going concern은 organism이나 mechanism의 要素를 그 自體內에 包含하면서 거기에 人間의 目的意志와 그 目的을 合目的的으로 達成하려는 意志活動이 加해진 것이다. 經營現象은 合目的的인 組織의in 形成過程을 이루고 있다. 거기에 있어서 企業家나 經營者의 活動은 客觀의in 狀況에 의하여 規定되면서도 他方으로는 一定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그들의 狀況에 대하여 意識의in 適應하여 다시 意志의in 活動하여 그것을 合目的의in 再形成하는

1) S. M. Daugert: *The philosophy of Thorstein Veblen*, 1950, p. 45.

2) 占部都美著. 經營學方法(第一卷), p. 26. 및 近代經濟學, p. 86.

3) J. R. Commons: *The economics of collective action*, 1951, p. 21.

過程이다. 要는 經營現象은 客觀的인 狀況과 形成의 組織的인 意志活動과의 一體的인 相互作用 關係에 의하여 하나의 「組織的인 全體」으로 形成되어 統合되고 있는 것이다.¹⁾ 코몬스 (J. R. Commons)가 『制度는 going concern이며 going concern은 組織이다.』라고 規定한 바와 같이 組織論의 思考에 根據한 制度의 方法은 計劃經濟 및 統制經濟下의 國民經濟現象의 認識에도 適用되지만 그것은 統一的 意志가 形成的으로 作用하는 經營現象의 認識에 있어서 더욱 더 妥當성을 갖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經營은 mechanism의 自然法的 運動法則이 支配하는 「죽은 機構體」가 아니라 그것은 形成的 統合的(integrate) 發展的(evolve)인 「살어있는 全體」를 形成하고 있다. 合目的的 諸經營活動은 客觀的인 狀況에 의하여 規定되어 經營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狀況의 法則을 利用하되 狀況에 대하여 意識的으로 適應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 同時에 從來의 狀況에 대하여 合目的的 意志活動이 加해지므로써 狀況은 再形成되어 經營은 하나의 全體에서 다른 全體으로 連續的으로 變化하는 動的 發展過程을 이루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經營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全體」(the whole a-making)이며 過去의 要素를 現在 받어들이면서 같은 現在에 將來의 要素를 內包하는 性質의 것이다. 實로 그와 같은 意味로 볼 때에 經營은 going concern이라고 할 수 있다. 經營現象은 形成되어 統合되어 그리고 動的으로 發展하는 하나의 「組織的인 全體」로서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²⁾

經營活動을 規定하는 制度의 狀況은 그의 狀況과 區別되어야 한다. 그것은 當然히 經營學의 對象의 範圍가 되기 때문이다.前述한 바와 같이 經營의 形成의인 意志活動에 의하여 作用하는 狀況을 固有의 經營狀況이라 하고, 그밖의 狀況을 外在的 狀況이라고 한다. 따라서 外在的 狀況이란 物價나 利子의 現象처럼 經營의 意志의 形成的 活動에 의하여서는 左右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內在的 狀況은 經營狀況을 意味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經營의 生產構造 販賣構造 資本構造 또는 經營者와 從業員과의 社會的 關係는 이 經營의 內在的 狀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經營의 內在的 狀況이 經營學의 對象範圍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經營狀況은 經營規模의 擴大와 市場經濟의 構造變化에 따라서 擴大되어가는 傾向에 있다. 市場經濟的 條件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外在的 狀況임으로 이것은 經濟學의 對象은 되어도 經營學으로서는 「주어진 것」(givens)이며 그 對象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不完全競爭下에서는 經營은 市場計劃活動에 의하여 市場에 있어서 自己貿易를 위하여 市場經濟的 條件에 對抗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市場經濟的 狀況에 대한 意識의 適應過程으로서 販賣政策 市場豫測 市場分析 販賣領域에 있어서의 計劃 販賣政策上의 手段이라는 諸形成作用을 加하게 됨에 거기에는 經營狀況의 擴大가 나타나는 것이다.³⁾

이와 같이 볼 때 經營狀況은 外部로부터 外在的 狀況에 의하여 規定당하고 있는 것이며孤立的으로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換言하자면 國民經濟의 狀況은 經營狀況에 대하여 環境的 條件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經營狀況이 決코 無秩序한 것이 아니라 各要素의 論理的 法則의in相互關係에 의하여 構成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一定한 客觀的인 「經營構造」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이 經營構造에 있어서의 法則의 關係를 認識하는 것으로서 經營理論이 成立한다.勿論 이때의 經營構造는 經營活動에 대하여 「주어진 것」(givens)은 決코 아니다. 經

1) 占部都美著: 經營學方法, p. 27.

2) 同書, p. 28. 近代經營學, pp. 82~84, 88.

3) E. Cuienberg: *Einführung in die Betriebswirtschaftslehre*, 1958.

吉田和夫, 杉原信男 共譯 昭和34年12月版, pp. 101~123.

營構造는 經營活動을 規定함과 同時に 經營活動은 經營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經營構造를 合目的의으로 組織化하여 이것을 再形成하도록 作用한다. 너무기 組織的 形成의in 經營活動은 經營構造內에 沈澱化하여 客觀化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營은 이것을 過程의으로 본다면 經營構造와 經營活動의 一體의in 相互關係에 의하여 機能하는 形成過程을 이루며 이것을 構成體로서 본다면 經營構造와 經營活動의 相互關係에서 오는 「組織의in 全體」로서 組織되며 統合化되며 그렇게 하여 發展하여 가는 性質의 것이다.

이와 같이 經營의 本質을 考察할 때에 經營에 있어서의 法則의 關係를 研究하는 經營理論도 形成의 組織의 全體의in 觀點에서 行하여져야 한다. 고로 그와 같은 經營理論은 實踐의in 政策論 및 技術論도 반드시 論理의으로 結合되는 것이어야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經營現象의 本質에 비추어 形成의 經營學의 方法은 純粹理論科學의 그것과도 다르며, 또한 實踐科學 및 技術論의 그것과도 같지 않다. 經營活動을 規定하는 經營構造에는 그것을 構成하는 諸要素의 論理의in 相互關聯性下에 하나의 法則性이 作用하는 것이다. 이러한 經營構造에 있어서 法則性을 認識하는 것이 經營理論의 任務이다. 이때에 形成의in 理論科學으로서의 經營學은 經營하는 바당에 形成의 組織의 全體의in 觀點에서 經營構造에 있어서의 法則의 事實을 認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純粹理論科學의 方法은 어디까지나 經營現象에 있어서의 法則性發見을 自己目的으로 하는 것이며 實踐科學의 方法도勿論 그 基礎에는 經營現象에 대한 科學의 認識이 存在하여야 되지만 經營目的은 오히려 「주어진 것」(givens)이며 이 經營의 目的을 達成하는 데에 必要하며 直接의으로 應用이 되는 認識에 志向하는 데에 差異가 있다. 形成의in 理論科學에 있어서는 經營의 本質의 光明에 의하여 合目的의in 經營活動의 志向하는 經營目的을 밝히는 것을 하나의 重要한 任務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形成의 理論科學으로서 經營學이 純粹理論科學의 志向과 實踐科學의 志向과의 어느 것에 가까운가를 決定하여야 된다고 한다면 後者の 志向에 가깝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理論의 輕視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多種多樣하여 더욱 複雜한 具體的 事實에서 抽出된 理論은普遍妥當하여 어느 意味에 있어 가장 實際의이기』¹⁾ 때문이다. 企業家나 經營者의 意志의 活動前에 經營의 本質 또는 現象의 認識이 必要하며 當爲 (sollen)의 前에 存在 (sein)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²⁾

이와 같이 經營學이 形成의 組織의in 理論科學이며 理論과 政策과의 不可分의 結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 認識對象인 經營現象의 本質의 性格에 基礎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經營現象은 經營狀況의 客觀的 法則에 의하여 規定되면서 同時に 組織的, 合目的의in 經營活動이in 狀況에 意識的 計劃의으로 適應하며 또한 이것을 再形成하는 「組織의 全體」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經營現象이나 그 客觀의in 狀況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한 法則의 認識은 經營의 目的을 合目的의으로 洋成하는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經營活動에 대한 客觀의in 規範 規準을 提供하는 것과 相互關聯의으로 結付되는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經營學에 있어서 理論과 政策이 統一의in 全體의in 關係를 가지는 것은 經營學의 對象인 經營現象의 本質의 性格에서 規定되는 것이다. 생각하면 理論과 政策과의 結付는 經營學의 本質의in 性格을 이루기 때문이다.

IV. 結　　言

이상 經營을 制度로서 考察한 바와 같이 經營現象은 하나의 經營目的을 志向하는 過程에서

1) 増地庸次郎著：經營學要論 昭和34年 初版. p. 22.

2) 占部都美著：經營學方法(第一卷) p. 36.

經營構造의 諸要素의 相互均衡의 制約과 對外狀況의 制約的 關係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에 分明히 經營現象은 制度의 現象이라 아니치 못할 것이다. 人間社會 뿐만 아니라 自然界 動物界까지도 어느 他要素로부터 影響과 關係들이 없이 純粹히 獨自의 으로 存在할 수 있는 事實이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물며 組織의 人關社會에 있어서 單獨의 數學的 考慮를 基礎로 하는 純粹한 合理主義의 行爲란 存在할 餘地도 없거니와 어디까지나 合理主義 그 自體는 制度內에 있어서만 可能한 일이다.

이러한 制約下에서 經營現象의 合目的的 形成을 遂行하는 것이 오늘의 經營이다. 經營現象은 大部分關係로서 形成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經營의 生產構造 販賣構造 資本構造 또는 經營者와 從業員과의 社會的 關係等이 經營目的을 위하여 合目的的으로 統合되어 調整되어 形成化되는 過程이 經營現象이다. 이러한 각部分要素는 一定한 秩序下에 理論的 法則의in 相互關係에 의하여 構成되므로 그것은 一定한 客觀的 經營構造를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部分關係를 다시 分析하여 보면 生產構造와 經營者와 從業員과의 社會關係는 勞動過程을 中心으로 하는 下部組織인 技術過程이며 資本構造와 販賣過程은 所有過程을 中心으로 하는 営利過程이다. 그리하여 兩過程은 經營에 있어서 각기 相異한 指導原理를 基礎로 하는 制度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營構造는 一定한 秩序下에 上記의 各制度의 理論的 法則의in 相互關係에 의하여 構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經營狀況(managerial situation)에 있어서의 法則의 關係를 認識하는 것이 經營理論이다.

앞서 말한 勞動過程은 生產을 意味하기 때문에 經濟性을 指導原理로 한다고 보고 営利過程은 利潤을 目的으로 하므로 收益性을 指導原理로 한다고 보면 經營現象에 있어서의 指導原理는 經濟性과 收益性의 相互關係로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經濟性과 收益性을 指導原理로 하는 經營構造의 經營狀況을 經營의 內在狀況이라 한다. 그러나 經營이 市場經濟下에 存在하는 한 經營狀況은 外部로부터 外在的 狀況이라는 國民經濟의 狀況이 주는 環境的 制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經營現象의 諸制度의 相互關係에 의하여 形成된 經營構造는 經營理論構成의 基礎로서의 經營活動을 規定하는가 하면 經營活動은 또 經營目的의 達成을 위한 合目的的 行爲로서 經營構造를 再形成하는 方向으로 努力한다. 그리하여 形成의in 經營活動은 經營構造內에 變動을 주는 過程에서 客觀化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營이란 經營構造와 經營活動이 相互關係에 의해서 機能하는 形成過程으로서의 「組織의in 全體」로서 組織되어 統合되어 發展하여 가는 存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考察하여 볼 적에 우리는 經營의 指導原理로서의 選擇原理가 單純히 單一性的 것이 못된다 하여도 無理는 아닐 것이다.

一面이 二重構造의 經營은 또한 二重制度의 矛盾關係에 있음을 看過하여서는 안된다. 企業制度와 經營制度는相互矛盾된 行爲原理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經營參加員은 二重行爲라는 矛盾過程을 밟게 되는 것이다.

원래 勞動者는 固有의 經營過程에 있어서 能率原理와 社會的 用設性의 原理에 따라서 行動함으로써 그 經營制度의 一構成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私有財產制度의 現社會에 있어서는 勞動者는 하나의 商品으로서 勞動力を 提供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勞動力의 所有者로서 自己 勞動力を 去來하는 同時に相當한 代價를 取得할 權利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勞動者는 經營參加員으로서 勞動過程上의 一員이 되는 同時に 所有權者로서 反對給付를 取得하는 所有過程의 一員이 되는 것이다. 所有過程에 있어서는 勞動者나 企業家나 다같이

經營手段의 所有者로서 機能하는 것이다. 企業家도 勞動者도 다 같이 經營參加者로서 一面 紹付를 行하는 同時に 他面 그 代價를 取得하는 意味에서 二重的 機能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런 意味에 있어서 勞動者 經營者 企業家는 모두 企業社會關係의 構成員인 同時に 經營社會關係의 構成員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企業社會關係에 있어서의 行爲는 對等한 法의立場에서 各自의 所有權(生產要素 및 生產物)의 去來를 目的으로 하므로 所有過程을 形成하게 되며 經營社會關係에 있어서는 各自 勞務契約條件下에 使用價值를 生產함으로써 勞動過程을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이와같은 相異한 制度로서 構成된 近代經營의 制度內에 位置한 것이 오늘의 經營參加者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經營參加者가 經營의 固有의 目的인 生產에 향하여 協同을 輕視하고 對等한 法의 地位에서 所有過程을 둘러싸고 利害關係에만 치우치게 된다는 經營은 破壊된 愛慮性이 쳐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所有에서 分離된 近代經營社會에 있어서의 經營者의 指導性¹⁾이 要請되는 바이지만 實로 近代生產技術構造에 비추어 企業이라는 收益過程(pecuniary process) 및 制度는 「文化的 矛盾」(cultural lag)²⁾의 存在라고 베블렌(Veblen)이 지적한 점은 重要한 示唆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1) 占部都美著: 近代經濟學(昭和33年) pp. 324~330 參照

2) Veblen은 企業制度와 經營制度와의 對立을 二定한 職業集團의 對立으로 생각한다. 그는『相異한 行爲規準은 各各 相異한 制度 및 社會關係를 形成한다』고 하여 勞動者は 固有의 經營過程에 있어서 能率原理와 社會的 用役性原理에 따라서 行動함으로써 經營制度의 一員이 되는 것이다. 他面 그 所用條件의 交渉過程에 있어서 勞動者は 企業家와 마찬가지로 收益의 行爲規準에 따라서 行動한다고 하여 勞動者は 企業過程에 參與하여 企業家와 마찬가지로 收益의 企業社會關係의 構成員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勞動者나 技術者集團이 能率과 社會的 用役性의 行爲規準에 의하여서만 行動하며 企業家集團은 收益의 行爲規準에 의하여서만 行動한다는 見解는 氏가 資本主義社會의 高度化된 生產構造로 말미암아 資本家의 收益過程과 賃金勞動條件下의 勞動過程이 分化存立된다고 생각한데에서 起因된 것 같다. 이것은 理論的으로 만드시妥當하다고는 할 수 없다. 現今에 있어서는 證券의 民主化로 말미암아 投資의 民主化가 確立되어 勞動者도 資本家의 收益過程에 參與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氏는 近代經營에 있어서 機械過程의 成立을 契機로 하여 成立한 經營制度를 認定하고 이에 대하여 收益의 企業制度가 近代生產技術構造에 비추어 矛盾의 存在임을 가르쳐서 cultural lag라 하였다.

拙稿:『近代經營의 二重構造의 矛盾과 그 止揚을 論證』(1959年度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參照

<SUMMARY>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Methodology of Business Administration

by Yil-soo Kahng

(Lecturer, Dong-kook University)

Two alternative principles have been made use of as a methodology of Business Administration. One is called the economic principle and the other the profitable principle. As such, they are different theoretically from each other, the economic principle established "die normative Betriebswirtschaftslehre" and the profitable principle "Technological Business Administration."

*

However, when we observe the managerial situation of business, we can recognize that two principles operate correlatively for the managerial object, and we can hardly grasp the intrinsic charac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without comprehending the correlativeness of two principles. In fact, the managerial consists of dual structures—production structure, capital structure. Now then, the former forms labour process which is called technical process in other meaning and the latter ownership process which is called pecuniary process. As the above, the managerial situation has dual structures in itself. And so, it is testified that two principles are in correlativeness when the business is operated.

*

Hereby, institutional analysis is required to answer to the natur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oday's Business Administration is Going Concern and the Going Concern is an institution. Therefore, we have to grasp the natur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s an Institution.